

비상시 향토방위령

[제정 1950.7.22 대통령 긴급명령 제7호 전부처]

第1條 本令은 檢紀 4283年 6月 25日 北韓 傀儡軍의 侵寇로 因하여 發生한 非常事態에 있어서 國民의 自衛組織을 強化하므로써 鄉土를 防衛하며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滿14歲以上의 國民은 모두 本令에 依하여 鄉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條 滿14歲以上의 國民은 一致團結하여 共產思想을 防止하므로써 國難을 克服하고 大韓民國의 護持發展을 為하여 總力を 集注하여야 한다.

第4條 滿14歲以上의 國民은 傀儡軍, 共匪 其他 이에 協力하는 者를 發見하거나 이에 關한 情報를 探知하였을 때에는 即時 警察官署에 通報하여야 한다.  
殺人, 放火, 强盜, 强姦, 竊盜, 通貨偽造, 傷害, 往來妨害, 恐喝脅迫, 飲料水에 關한 罪에 對하여 서는 前項의 例에 依한다.

第5條 鄉土防衛의 中核體로서 各 部落을 單位로 하여(都市는 洞里單位) 自衛隊를 組織하여야 한다.  
但, 10戶 未滿의 部落은 隣接한 他部落과 合하여 組織할 수 있다.

第6條 自衛隊員은 當該部落에 居住하는 17歲以上 50歲以下의 男子로서 思想이 健實한 者 中에서 隊長이 選任하되 青年防衛隊員, 大韓青年團員을 主로 한다. 但, 公務員 其他 公共機關의 職員은 除外한다.  
防衛上 必要한 때에는 前項에 準하여 女子隊員을 둘 수 있다.

第7條 自衛隊에 隊長 1人, 副隊長 1人을 둔다.

✓ 隊長과 副隊長은 青年防衛隊員中에서 所轄警察署長이 任命한다.

隊長은 隊務를 統轄하고 副隊長은 隊長을 輔佐하며 隊長이 事故가 있거나 또는 矢缺하였을 때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8條 自衛隊의 任務는 傀儡軍, 共匪 其他 이에 協力하는 者의 動態에 關한 情報를 蒐集連絡하며 部落의 防衛와 防犯을 目的으로 한다.

前項의 任務를 遂行하기 為하여 自衛隊員은 部落(洞里)에 있어서 立哨, 巡察을 하여야 하며 異狀을 發見한 때에는 急速히 警察官署에 連絡通報하여야 한다.

第9條 自衛隊員의 勤務方法은 隊가 스스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 必要한 때에는

## 비상시 향토방위령

[제정 1950.7.22 대통령 긴급명령 제7호 전부처]

第1條 本令은 檀紀 4283年 6月 25日 北韓 傀儡軍의 侵寇로 因하여 發生한 非常事態에 있어서 國民의 自衛組織을 強化하므로써 鄉土를 防衛하며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滿14歲以上의 國民은 모두 本令에 依하여 鄉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條 滿14歲以上의 國民은 一致團結하여 共產思想을 防止하므로써 國難을 克服하고 大韓民國의 護持發展을 為하여 總力を 集注하여야 한다.

第4條 滿14歲以上의 國民은 傀儡軍, 共匪 其他 이에 協力하는 者를 發見하거나 이에 關한 情報를

探知하였을 때에는 即時 警察官署에 通報하여야 한다.

殺人, 放火, 强盜, 强姦, 竊盜, 通貨偽造, 傷害, 往來妨害, 恐喝脅迫, 飲料水에 關한 罪에 對하여 서는 前項의 例에 依한다.

第5條 鄉土防衛의 中核體로서 各 部落을 單位로 하여(都市는 洞里單位) 自衛隊를 組織하여야 한다.

但, 10戶 未滿의 部落은隣接한 他部落과 合하여 組織할 수 있다.

第6條 自衛隊員은 當該部落에 居住하는 17歲以上 50歲以下의 男子로서 思想이 健實한 者 中에서 隊

長이 選任하되 青年防衛隊員, 大韓青年團員을 主로 한다. 但, 公務員 其他 公共機關의 職員은 除外 한다.

防衛上 必要한 때에는 前項에 準하여 女子隊員을 둘 수 있다.

第7條 自衛隊에 隊長 1人, 副隊長 1人을 둔다.

✓ 隊長과 副隊長은 青年防衛隊員中에서 所轄警察署長이 任命한다.

隊長은 隊務를 統轄하고 副隊長은 隊長을 輔佐하며 隊長이 事故가 있거나 또는 曠缺하였을 때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8條 自衛隊의 任務는 傀儡軍, 共匪 其他 이에 協力하는 者의 動態에 關한 情報를 蒐集連絡하며

部落의 防衛와 防犯을 目的으로 한다.

前項의 任務를 遂行하기 為하여 自衛隊員은 部落(洞里)에 있어서 立哨, 巡察을 하여야 하며 異狀

을 發見한 때에는 急速히 警察官署에 連絡 通報하여야 한다.

第9條 自衛隊員의 勤務方法은 隊가 스스로 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 必要한 때에는

警察官署의 長  
이 그 方法을 指示할 수 있다.

第10條 自衛隊員이 任務執行中 傀儡軍, 共匪 其他 이에 協力하는 者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隊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逮捕할 수 있다.

第4條第2項의 規定한 犯人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면 逃亡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逮捕할 수 있다.

前2項의 逮捕는 各 自衛隊의 管轄區域內에 限하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48時間內에 最近地所在의

警察官署에 이를 引渡하여야 한다.

第11條 自衛隊員에게는 1週日 3回以上 1回 2時間以上的 訓練을 加하여야 한다.

第12條 自衛隊員은 勤務中 所屬 自衛隊名과 그 姓名을 明記한 標識를 左胸部에 佩用하여야 하며 竹

槍, 榴彈 또는 官으로부터 所持를 許한 武器를 携帶한다.

第13條 自衛隊는 所轄警察官署의 長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14條 自衛隊에는 隊員名簿, 隊員勤怠表, 勤務日誌 및 會計에 關한 帳簿等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15條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6月以下の 懲役, 20萬圓以下의 罰金, 科料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16條 自衛隊長 또는 副隊長이 警察官署의 長의 指揮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거나  
自衛隊員이 隊長

또는 副隊長의 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職務를 懈怠이 하였을 때에는 1年以下の 懲役,

禁錮, 10萬圓以下의 罰金, 科料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17條 自衛隊員이 不法逮捕하거나 其他 職權을 濫用하였을 때에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20萬圓以  
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8條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는 그 管內全域에 本令 公布日부터 5日以内에 自衛隊組織을 完了하  
고 卽時 活動을 開始시켜야 한다.

第19條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는 本令 施行에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附則 <제7호, 1950.7.22>  
本令은 檢紀 4283年 7月 22日부터 施行한다

警察官署의 長  
이 그 方法을 指示할 수 있다.

第10條 自衛隊員이 任務執行中 僦僕軍, 共匪 其他 이에 協力하는 者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隊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逮捕할 수 있다.

第4條第2項의 規定한 犯人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卽時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면 逃亡할 夏慮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逮捕할 수 있다.

前2項의 逮捕는 各 自衛隊의 管轄區域內에 限하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48時間內에 最近地所在의 警察官署에 이를 引渡하여야 한다.

第11條 自衛隊員에게는 1週日 3回以上 1回 2時間以上의 訓練을 加하여야 한다.

第12條 自衛隊員은 勤務中 所屬 自衛隊名과 그 姓名을 明記한 標識를 左胸部에 佩用하여야 하며 竹槍, 提捧 또는 官으로부터 所持를 許한 武器를 携帶한다.

第13條 自衛隊는 所轄警察官署의 長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第14條 自衛隊에는 隊員名簿, 隊員勤怠表, 勤務日誌 및 會計에 關한 帳簿等을 備置하여야 한다.

第15條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6月以下の 懲役, 20萬圓以下의 罰金, 科料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16條 自衛隊長 또는 副隊長이 警察官署의 長의 指揮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거나  
自衛隊員이 隊長 또는 副隊長의 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職務를 慵慢이 하였을 때에는 1年以下の 懲役, 禁錮, 10萬圓以下의 罰金, 科料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17條 自衛隊員이 不法逮捕하거나 其他 職權을 濫用하였을 때에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20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8條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는 그 管內全域에 本令 公布日부터 5日以内에 自衛隊組織을 完了하고 即時 活動을 開始시켜야 한다.

第19條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는 本令 施行에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附則 <제7호, 1950.7.22>  
本令은 檢紀 4283年 7月 22日부터 施行한다